

신 주 발 행 공 고

주식회사 오르비텍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4월 3일 개최한
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 8,000,000 주(이하 "본 주식"이라 한다.)
2. 1 주당 액면가액 : 500 원
3. 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
4. 1 주당 발행가액 : 舊 「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 57 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. 단,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 5-15 조의 2 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 인율 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.

- (1) 1 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할인율 20%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. 단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.

$$1 \text{ 차 발행가액} = \text{기준주가} \times (1 - \text{할인율}) / [1 + (\text{증자비율} \times \text{할인율})]$$

- (2) 2 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할인율 20%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. 단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.

$$2 \text{ 차 발행가액} = \text{기준주가} \times (1 - \text{할인율})$$

- (3) 확정 발행가액은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. 단,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%를 적용

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. 단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.

$\text{확정 발행가액} = \text{Max}[\text{Min}(1 \text{ 차 발행가액}, 2 \text{ 차 발행가액}), \text{청약일 전 제 3 거래일 부터 제 5 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\%}]$

5. 신주배정기준일 : 2017 년 04 월 20 일
6. 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7 년 04 월 21 일 ~ 2017 년 04 월 27 일
(명의개서대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)
7. 청약기간
 - (1) 우리사주조합 : 2017 년 06 월 12 일
 - (2) 구주주 : 2017 년 06 월 12 일 ~ 2017 년 06 월 13 일 (2 일간)
 - (3) 일반공모청약자 : 2017 년 06 월 15 일 ~ 2017 년 06 월 16 일 (2 일간)
8. 청약처
 - (1) 우리사주조합 :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 본·지점
 - (2)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
 - 실질주주 : 주권을 위탁한 증권회사 또는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의 본·지점
 - 명부주주 :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 본·지점
 - (3) 일반공모청약자 :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 본·지점
9.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
 - (1)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 주로 하며,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.
 - (2)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 주로 하며,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 1 주당 0.5101497074 주로 한다(1 주 미만은 절사함). 또한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청약한도의 20%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. 단,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,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.
 - (3) 일반공모청약자는 최소 청약단위를 100 주로 하여 아래에 구분된 범위로 청약하되, 일반공모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 청약,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%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
구분		청약단위
100 주 초과	1,000 주 이하	100 주
1,000 주 초과	5,000 주 이하	500 주
5,000 주 초과	10,000 주 이하	1,000 주
10,000 주 초과	50,000 주 이하	5,000 주

50,000 주 초과	100,000 주 이하	10,000 주
100,000 주 초과	500,000 주 이하	50,000 주
500,000 주 초과		100,000 주

10. 청약증거금 : 청약금액의 100%

11. 청약방법

- (1)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의 본·지점에서 일괄 청약한다.
- (2)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위탁한 증권회사의 본·지점 및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의 본·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. 다만,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자기명의로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의 본·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.
- (3)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%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. 이때,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%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.
- (4)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공모청약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, 청약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및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.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공모청약자의 청약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1개의 청약처에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며,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1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. 또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시, 청약처에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, 동규정 제 9 조 제 4 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(5)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, 1 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, 이때 받는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2. 배정방법

- (1) 우리사주조합 청약 : “본 주식”의 20%인 1,600,000 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.
- (2) 구주주 청약 : 신주배정기준일 18: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(이하 “구주주”라 한다.)의 소유주식수 1 주당 0.5101497074 주로 배정하며,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. 단,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,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.
- (3) 초과청약 :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가 초과청약(배정주식 1 주당 0.2 주)한 주식수에 비

례하여 배정하며,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한다. 단, 초과청약주식수가 실권주식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100% 배정한다.

$$\text{청약한도주식수} = \text{신주인수권증서청약한도주식수} + \text{초과청약한도주식수}$$

$$(*) \text{신주인수권증서청약한도주식수} = \text{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}$$

$$\text{초과청약한도주식수} = \text{신주인수권증서청약한도주식수의 20\%}$$

- (4) 일반공모 청약 :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,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「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 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주식의 10%를 배정하며, 그 중 5%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우선배정한다. 나머지 90%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.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을 포함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%(이하 "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"이라 한다.),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90%(이하 "일반청약자 그룹"이라 한다.)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. 다만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과 일반청약자 그룹 중 청약미달 그룹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.
- 1) **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**,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한다. 단, 단추처리비율은 5 사 6 입을 원칙으로 하되, 잔여주가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. 이후 최종 잔여주는 최대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,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최종 잔여주보다 많은 경우에는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다.
 - 2) **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**, 청약주식수 대로 배정하고,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이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.
 - 3)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은 「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 9 조 제 2 항에 의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 50,000 주(액면가액 500 원 기준)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공모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잔여주는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.
13. 배정공고 : 일반공모청약 배정공고는 2017 년 06 월 19 일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한다.
 14. 환불일 : 2017 년 06 월 20 일
 15. 청약증거금의 대체 :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,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.
 16. 납입기일 : 2017 년 06 월 20 일
 17. 주금납입처 : KB 국민은행 구로동종합금융센터
 18. 주권교부예정일 : 2017 년 06 월 29 일

19. 주권교부처 :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
20. 주권상장예정일 : 2017 년 06 월 30 일
21. 배당기산일 : 2017 년 01 월 01 일
22. 자금조달의 목적 :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, 차입금상환
23. 증권회사의 인수주선방법 : 잔액인수
24. 대표주관회사 :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
25. 명의개서대리인 :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
 - (1)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,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.
 - (2)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한 명부주주에 대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교부하는 방식 또는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주주별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 - (3)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, 최소한 5 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한다.
26. 기타 사항
 - (1)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
 - (2) 기타 본 주식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주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 : 2017 년 04 월 20 일
2. 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7 년 04 월 21 일 ~ 2017 년 04 월 27 일

2017 년 4 월 4 일

주식회사 오르비텍

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, 8 층

대표이사 김 희 원